투자 위험 등급 4 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04.0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04.2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69-3449/asset.daishin.com),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3.04.07.)

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코드: 53972)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대신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 모투자신탁**에 **40%이하**를 투자합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 위험 및 이자율 변동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에 40%이하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국공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에 50%이상으로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주요투자전략
대신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국공채 80% 이상 투자
	- 국공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합니다. 국공채의 범위 :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채, 특수공공법인채(토지개발채, 산금채, 전력채, 예보채, 부실정리기금채, 증금채)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주식 60%이상(단, 국내주식 60%이상) - 채권 및 어음 등 40%이하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없음	0.800	0.53	-	0.8055	83	169	258	449	9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없음	0.535	0.265	-	0.5402	55	113	174	303	679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해당 집합투자기구는 A,Ae 클래스가 없어, 투자시 C,Ce 클래스와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2.04.08 ~ 23.04.07	21.04.08 ~ 23.04.07	20.04.08 ~ 23.04.07	18.04.08 ~ 23.04.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2006-01-13	-3.40	-3.42	5.58	0.98	3.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	2017-09-19	-3.13	-3.16	5.85	1.24	1.00
비교지수(%)	-	-1.25	-4.11	4.39	1.75	3.89
수익률 변동성(%)	2006-01-13	6.44	5.64	6.66	7.39	7.25

(주 1) 비교지수 : [[(KOSPI200 X0.9) + (CD 금리 X0.1)]X0.4] + [[(KIS 국고채 2~3 년*0.72) +(KIS 통안 1~2 년 * 0.18) + (Call 금리 0.1)]X0.6]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단위 :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준영	1979	책임(본부장)	19 개	1,503 억원	-2.62	-2.66	2.58	0.64	10 년 5 개월
이창훈	1980	책임(팀장)	2 개	2,275 억원	-	-			3 년 6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

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 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투자신탁으로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업자	대신자산운용㈜ (대표번호: 02-769-3449 / 인터넷 홈페이지 : asset.daishin.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1 좌=1 원)
효력발생일	2023 년 4 월 28 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1 페이지) 및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가 매입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F)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신 퇴직연금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539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BV8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V7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CF)	**BV79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투자대상"과"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신 퇴직연금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539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BV8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V7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CF)	**BV79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01.13.	최초설정
2006.12.26.	약관변경 : 보수율 정정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
2009.07.03.	펀드명 변경
2009.12.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채권)
2010.04.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주식)
2010.04.15.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변경(이익배분, 공시)
2010.08.1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주식)
2011.01.14.	주식부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명식->경우현)
2011.04.12.	재무재표 확정에 따른 정정, 시행령개정반영(50억미만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사항 및 수시공시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2011.11.24.	다른 자투자신탁의 모자형구조 변경 자펀드 추가 : 연금 국공채 자(채권)- 실버연금 국공채(모)에 90%이상투자 자펀드 투자 구조 변경(퇴직연금 자(채권)): 실버연금 국공채(모) 45%이상투자->90%이상 투자 ,실버연금회사채(모) 45%이하 투자삭제
2013.01.28.	환매수수료 삭제(동 집합투자기구 및 모투자신탁내 다른 자투자신탁 중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수시공시 및 보고서 교부 관련, 임의해지시 통지절차등), 다른 자투자신탁 명칭변경 반영, 가입자격 명확화 표기(퇴직연금 사업자)
2013.05.24.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대신 밸런스 배당주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기구관련회사 신주소 기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 조 개정사항 반영(모투자신탁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재무재표 확정에 따른 업데이트,기업공시서식 변경 반영, 채권평가회사 추가(에프앤자산평가)
2013.07.25.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대신 퇴직연금40 삼성그룹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3.09.02.	재표제표 확정에 따른 변경, 채권운용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김삼한->유태규) 변경
2014.04.28.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반영,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4.08.01.	동일한 모펀드(대신실버연금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는 자펀드(대신 퇴직연금40 포르테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추가,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반영,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4.09.01.	모자형 구조 기재방법 변경,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5.12.16.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업자업자 대표이사 변경,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4.10.01 시행, 2015.02.10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5.07.08 시행, 2015.10.23시행, 2015.10.25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2015.10.25시행)
2016.02.29.	채권운용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유태규->임동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16.01.21)에 따른 요약정보 신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6.01.25 시행)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보수 및 수수료 삭제,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03.2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경우현->김종석),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영('16.7.1 시행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2016.07.30.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환매 기준시점 변경(15시->15시30분)
2016.10.18.	- 주식형 모투자신탁 추가: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펀드명칭 변경 (대신퇴직연금 40 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대신퇴직연금 40 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반영(2016.04.01 시행) * 이익분배 관련 조항에 유보가능한 분배금으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추가
2016.12.05.	모투자신탁 삭제(대신 실버연금 대표주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17.02.02.	- 당사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 운용역 변경(김종석 팀장(책임운용역), 임동영 본부장(책임운용역) -> 김미연 본부장(책임운용역), 임동영본부장(책임운용역), 김종언 팀장(부책임운용역))
2017.02.24.	-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정기 갱신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5.55%->5.51%)
2017.08.17.	- 일반형에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기존 종류형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수익증권은 변경 후 Class C) - 종류 수익증권 클래스 추가 (Class C-e, Class C-F)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2018.07.10.	-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5.51%->5.75%) -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 이전에 따른 변경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17.01.01 시행) - 오기정정(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정정후 운용-53972, Class C-BV800)

2018.09.21.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채권운용부문 책임운용역 변경(책임운용역 : 김미연,임동영->김미연,김민규/ 부책임운용역 : 김종언)
2019.01.25.	- 운용역변경(책임운용역 : 김미연,김민규/ 부책임운용역 : 김종언->책임운용역: 김종언, 김민규/부책임운용역 : 신민호)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5.75%->5.49%)
2019.07.31.	- 운용역변경(책임운용역 : 김종언,김민규 부책임운용역 : 신민호->책임운용역 :조윤호, 김민규, 부책임운용역 : 신민호)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01.15.시행)
2019.09.18.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변경(2019.8.1)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19.11.27.	- 책임운용역 변경 (책임운용역 : 조윤호, 김민규 / 부책임 : 신민호 -> 책임운용역 : 조윤호, 조지현 / 부책임 : 신민호)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9.16 시행)
2020.03.24.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반영(전기와동일)(5.49%)
2020.04.21.	- 운용역변경(책임운용역: 조윤호/조지현 -> 최준영/조지현, 부책임운용역: 신민호 -> 삭제)
2020.06.12.	- 운용역 변경(책임운용역 :최준영/조지현-> 책임운용역 : 최준영/이대은)
2021.03.12.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5.49%->8.36%) - 해외증권의 평가기준시점 변경사항 반영
2022.02.25.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8.36%->8.04%)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3.02.15.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8.04%->8.41%)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3.04.28	- 운용역 변경(책임: 최준영, 이대은 ->책임: 최준영, 이창훈) - 사무관리회사 사명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대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9 층(저동 1 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02-769-3449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2023.04.07.기준)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혼합형, 단위 : %)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최준영	1979	책임 (본부장)	19 개	1,503 억원	-2.62	-2.66	2.58	0.64	10 년 5 개월
이창훈	1980	책임 (팀장)	2개	2,275억원	-	-			3 년 6 개월

나. 운용전문인력 주요 이력

성명	주요이력
최준영	- KAIST 금융MBA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2010.07 ~ 2011.05 메리츠종금증권 장외파생팀 - 2011.06 ~ 2012.05 미래에셋증권 상품운용팀 - 2012.06 ~ 2018.03 멀티에셋자산운용 패시브운용팀 - 2018.04 ~ 2018.12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 2019.01 ~ 2020.03. : 대신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본부 - 2020.04 ~ 현재 :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이창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2023.02 ~ 現 대신자산운용 채권멀티운용본부 2016.03~ 2023.01 NH투자증권 채권운용부 2011.05~2016.02 대신증권 채권운용부 2006.11~2011.04 한국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채권운용은 채권멀티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주식운용은 퀀트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집합투자기구수 (개)	운용규모 (억원)
최 준 영	2	25
이 창 훈	-	-

다.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의 변경 내역

- 채권부분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조 지 현	2019.11.27. ~ 2020.06.11.
이 대 은	2020.06.12. ~ 2023.04.27.
이 창 훈	2023.04.28. ~ 현재

- 주식부분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조 윤 호	2019.07.31. ~ 2020.04.20.
최 준 영	2020.04.21. ~ 현재

주1) 2023.04..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의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신 민 호	2019.01.25. ~ 2020.04.20.

주1) 2023년 4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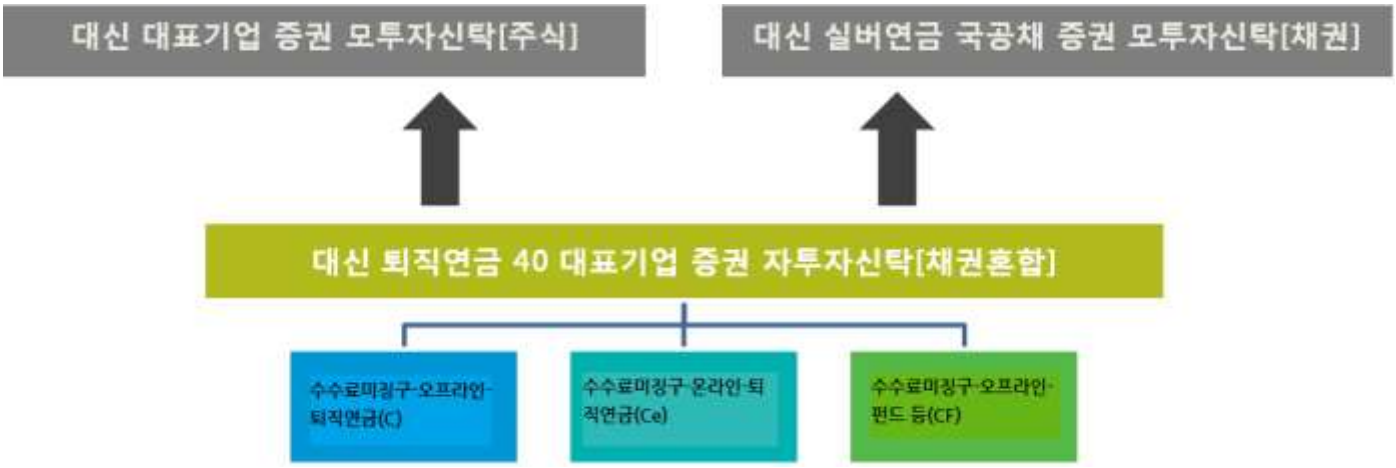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대신 실버연금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 퇴직연금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50% 이상	40% 이하

다.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F)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KOSPI200 X0.9)+(CD금리X0.1)]X0.4]+ [[(KIS국고채2~3년*0.72)+(KIS통안 1~2년 * 0.18)+(Call금리*0.1)]X0.6]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모 투자신탁수익증권	**40%이하**	-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모 투자신탁수익증권	**50%이상**	-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단기대출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양도성예금증서		
기타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 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규약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세부설명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	국공채	80% 이상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전증권,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	60%이상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 규약 제17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의 투자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채권	40%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 투자 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 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동일법인등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초과하는 행위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하,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2) 모펀드의 전략은 첨부된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 X0.9)+(CD금리X0.1)]X0.4]+ [[(KIS국고채2~3년*0.72)+(KIS통안 1~2년 * 0.18)+(Call금리*0.1)]X0.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공채 8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이자소득 추구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 BM: (KIS국고채2~3년*0.72) + (KIS통안 1~2년 * 0.18) + (Call금리*0.1)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 주식 60%이상(단, 국내주식60%이상) - 채권 및 어음 40%이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업가치의 차별적 반영과 주가의 차별화된 상승을 반영, 업종 대표주에 투자 ✓ 기업가치와 더불어 성장성, 수익성이 업종평균/시장평균 이상인 기업 ✓ 고배당기업 및 현금창출능력이 우량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 ✓ 지배구조가 우량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기업 BM : (KOSPI200 X 90%) +(CD금리X 10%)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 및 주식에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 투자신탁의 자본 소득 및 이자 소득을 통한 수익을 얻는 모자형 구조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8.41%** 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 및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퇴직연금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은 장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단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이 펀드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고, 운용전략 등을 고려할 때 하위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등급을 하향합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6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5주인 경우 155주간만으로 적용)
주3)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5)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6)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7)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8)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9)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 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인-퇴직연금(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CF)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 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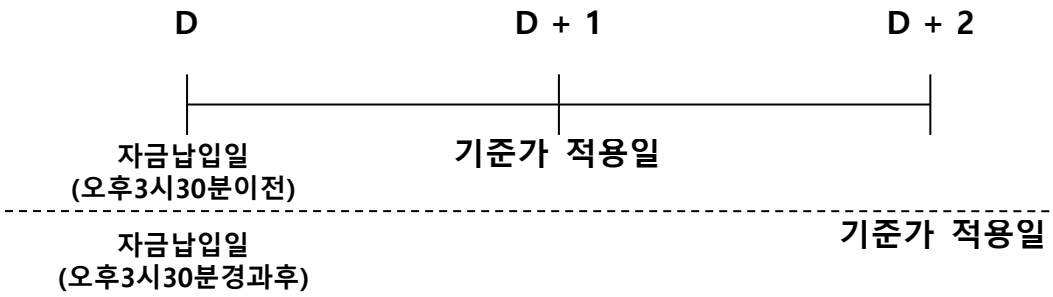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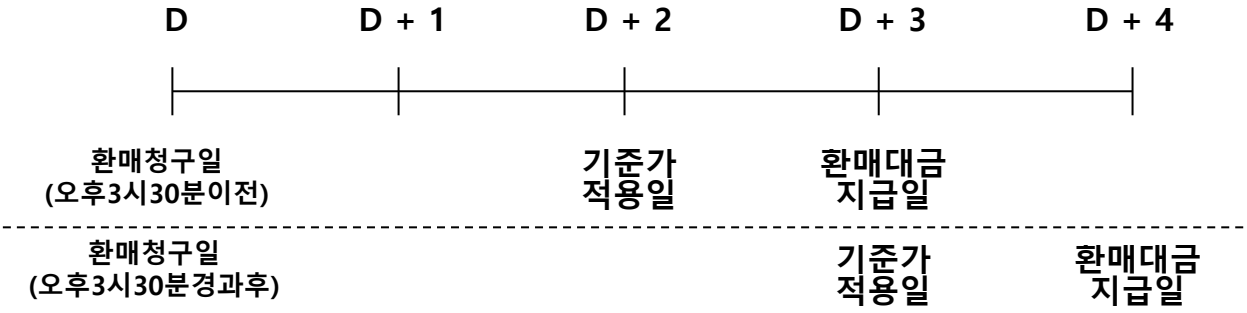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

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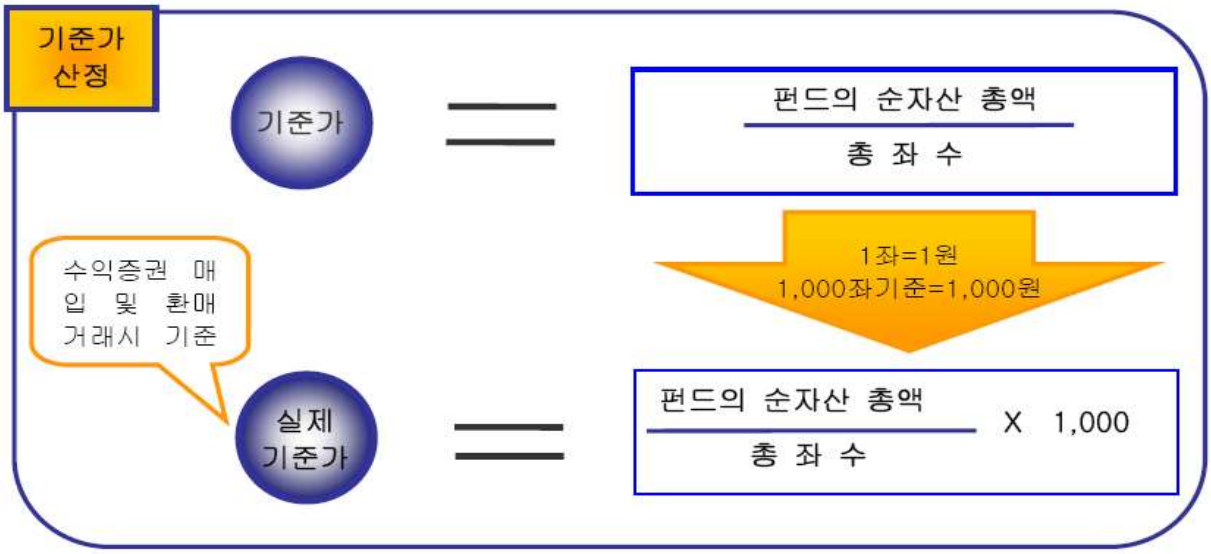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가격정보를 기초로 한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종류</th><th rowspan="2">가입자격</th><th colspan="4">수수료율</th></tr>
<tr><th>선취
판매수수료</th><th>후취
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h>전환수수료</th></tr>
<tr><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td><td rowspan="3">없음</td><td rowspan="3">없음</td><td rowspan="3">없음</td><td row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e)</td><td>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펀드 등(CF)</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td></tr>
<tr><td colspan="2">부과기준</td><td>매입시</td><td>환매시</td><td>환매시</td><td>전환시</td></tr>
</tabl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0.225	0.530	0.030	0.015	0.8000	-	0.0023	0.8023	0.8055	0.07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0.225	0.265	0.030	0.015	0.5350	-	0.0021	0.5371	0.5402	0.07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CF)	0.225	0.020	0.030	0.015	0.2900	-	0.0021	0.2921	0.2952	0.0785
지급시기	매6개월					-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1.13 ~ 2023.01.12]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2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1.13 ~ 2023.01.12]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4,248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영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7)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종류(클래스)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82	168	257	447	996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83	169	258	449	9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55	113	173	301	67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55	113	174	303	6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CF)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0	61	94	164	37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30	62	95	166	37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10월 1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

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7 기(2022.01.13 - 2023.01.1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6기(2021.01.13 - 2022.01.1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5기(2020.01.13 - 2021.01.1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통합재무상태표				
항 목		제 17 기	제 16기	제 15기
		(2023.01.12)	(2022.01.12)	(2021.01.12)
운용자산		5,277,331,524	6,110,247,320	6,708,243,797
	증권	5,146,366,407	5,975,089,246	6,036,476,05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0,965,117	135,158,074	671,767,74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8,183,140	41,610,019	85,557,216
자산총계		5,315,514,664	6,151,857,339	6,793,801,01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7,836,519	36,128,964	47,799,155
부채총계		47,836,519	36,128,964	47,799,155
원본		5,089,136,829	5,427,800,241	5,864,998,563
수익조정금		-12,115,769	-47,055,879	45,880,334
이익잉여금		190,657,085	734,984,013	835,122,961
자본총계		5,267,678,145	6,115,728,375	6,746,001,858

통합손익계산서				
항 목		제 17 기	제 16기	제 15기
		(2022.01.13 - 2023.01.12)	(2021.01.13 - 2022.01.12)	(2020.01.13 - 2021.01.12)
운용수익		-428,765,941	100,319,224	1,025,610,366
	이자수익	1,866,713	475,295	683,407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30,632,654	99,843,929	1,024,926,959
기타 수익		0	0	0
운용비용		41,396,705	47,303,462	45,715,017
	관련회사 보수	41,396,705	47,303,462	45,715,01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945,690	1,066,998	1,032,529
당기순이익	-471,108,336	51,948,764	978,862,82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통합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2.01.13 - 2023.01.12)			전기(2021.01.13 - 2022.01.12)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0	0	0	0	0	0

주1) 직전 회계연도: 2022.01.13 - 2023.01.12
주2)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 모집합투자기구의 거래비용 및 회전율

(1) 모집합투자기구명칭 :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2.01.13 - 2023.01.12)			전기(2021.01.13 - 2022.01.12)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77,300	0	0.0001	365,200	1	0.0001
합계	77,300	0	0.0001	365,200	1	0.0001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명칭 :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1.06.01 - 2022.05.31)			전기(2020.06.01 - 2021.05.3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522	2	0.1335	9,837	11	0.1133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1,538	0	0.01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1,522	2	0.1335	11,375	11	0.1233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1) 모집합투자기구명칭 :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해당사항 없음

(2) 모집합투자기구명칭 :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454	164	17,315	1,360	6,965	19.53	

주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이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종유형 평균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3)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17기(2023.01.12) 금 액		제16기(2022.01.12) 금 액		제15기(2021.01.12)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30,965,117		135,158,074		671,767,74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0,965,117		135,158,074		671,767,74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5,146,366,407		5,975,089,246		6,036,476,054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5,146,366,407		5,975,089,246		6,036,476,054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8,183,140		41,610,019		85,557,21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15,425		30,449		42,087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8,067,715		41,579,570		85,515,129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5,315,514,664		6,151,857,339		6,793,801,013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7,836,519		36,128,964		47,799,15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8,289,676		13,415,949		24,953,821	
4. 수수료미지급금	19,546,843		22,713,015		22,845,33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7,836,519		36,128,964		47,799,155
자 본						
1. 원 본	5,089,136,829		5,427,800,241		5,864,998,56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78,541,316		687,928,134		881,003,295	
(발행좌수 당기: 5,089,136,829 좌	이익잉여금	190,657,085		734,984,013		835,122,961
전기: 5,427,800,241 좌	수익조정금	-12,115,769		-47,055,879		45,880,334
전전기: 5,864,998,563 좌)						
(기준가격 당기: 1,033.30 원						
전기: 1,132.37 원						
전전기: 1,126.90 원)						
자 본 총 계		5,267,678,145		6,115,728,375		6,746,001,85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15,514,664		6,151,857,339		6,793,801,013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7기(2022.01.13-2023.01.12) 금 액		제16기(2021.01.13-2022.01.12) 금 액		제15기(2020.01.13-2021.01.12) 금 액	
1. 투자수익		1,866,713		475,295		683,407
1. 이 자 수 익	1,866,713		475,295		683,407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86,989,966		365,177,945		1,085,735,647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898,657,23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86,989,966		365,177,945		187,078,41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17,622,620		265,334,016		60,808,688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492,648,539		254,071,606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4,974,081		11,262,410		60,808,688	
운 용 비 용		42,342,395		48,370,460		46,747,546
1. 운용수수료	12,306,441		14,003,851		13,325,915	
2. 판매수수료	27,449,590		31,432,594		30,612,478	
3. 수탁수수료	1,640,674		1,867,017		1,776,624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45,690		1,066,998		1,032,52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71,108,336		51,948,764		978,862,82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92571364		0.009570869		0.16689907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대신 퇴직연금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운용펀드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13 - 2023.01.12	54	61	7	8	11	11	50	53
2021.01.13 - 2022.01.12	58	65	15	18	20	22	54	61
2020.01.13 - 2021.01.12	64	63	10	11	17	17	58	68

(주1) 2022.01.13 - 2023.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316,589좌/9,626,828원

(주2) 2021.01.13 - 2022.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305,638좌/10,537,430원

(주3) 2020.01.13 - 2021.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0,953,911좌/181,379,190원

나.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13 - 2023.01.12	6	7	3	3	4	4	5	5
2021.01.13 - 2022.01.12	3	4	6	7	3	4	6	7
2020.01.13 - 2021.01.12	2	2	3	3	2	2	3	4

(주1) 2021.01.13 - 2022.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725,805좌/10,537,430원

(주2) 2020.01.13 - 2021.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183,498좌/7,817,954원

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13 - 2023.01.12	48	54	4	4	7	7	45	47
2021.01.13 - 2022.01.12	55	62	7	8	14	16	48	54
2020.01.13 - 2021.01.12	62	61	8	8	14	14	55	64

(주1) 2022.01.13 - 2023.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280,873좌/9,626,828원

(주2) 2020.01.13 - 2021.01.1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4,802,537좌/173,561,23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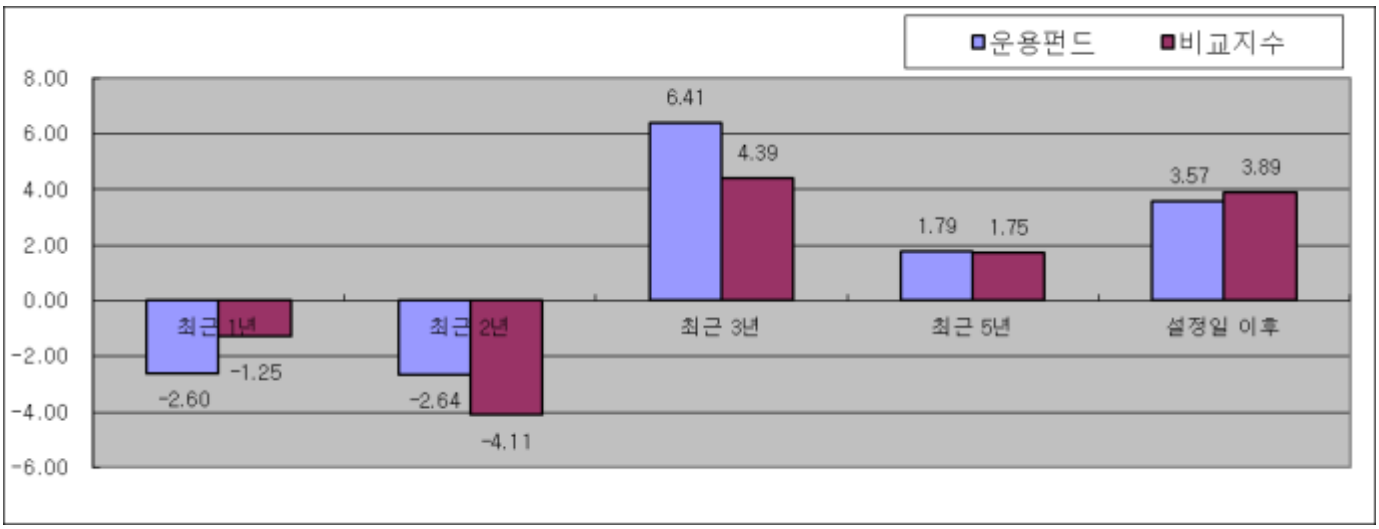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4.08 ~ 23.04.07	21.04.08 ~ 23.04.07	20.04.08 ~ 23.04.07	18.04.08 ~ 23.04.07	06.01.13 ~ 23.04.07
운용펀드	-2.60	-2.64	6.41	1.79	3.57
비교지수	-1.25	-4.11	4.39	1.75	3.89
수익률변동성(%)	6.44	5.64	6.66	7.39	7.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3.40	-3.42	5.58	0.98	3.30
비교지수	-1.25	-4.11	4.39	1.75	3.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3.13	-3.16	5.85	1.24	1.00
비교지수	-1.25	-4.11	4.39	1.75	1.50

주1) 비교지수 : [[(KOSPI200 X0.9) + (CD금리X0.1)]X0.4] + [[(KIS국고채2~3년*0.72) +(KIS통안 1~2년 * 0.18) + (Call금리 0.1)]X0.6]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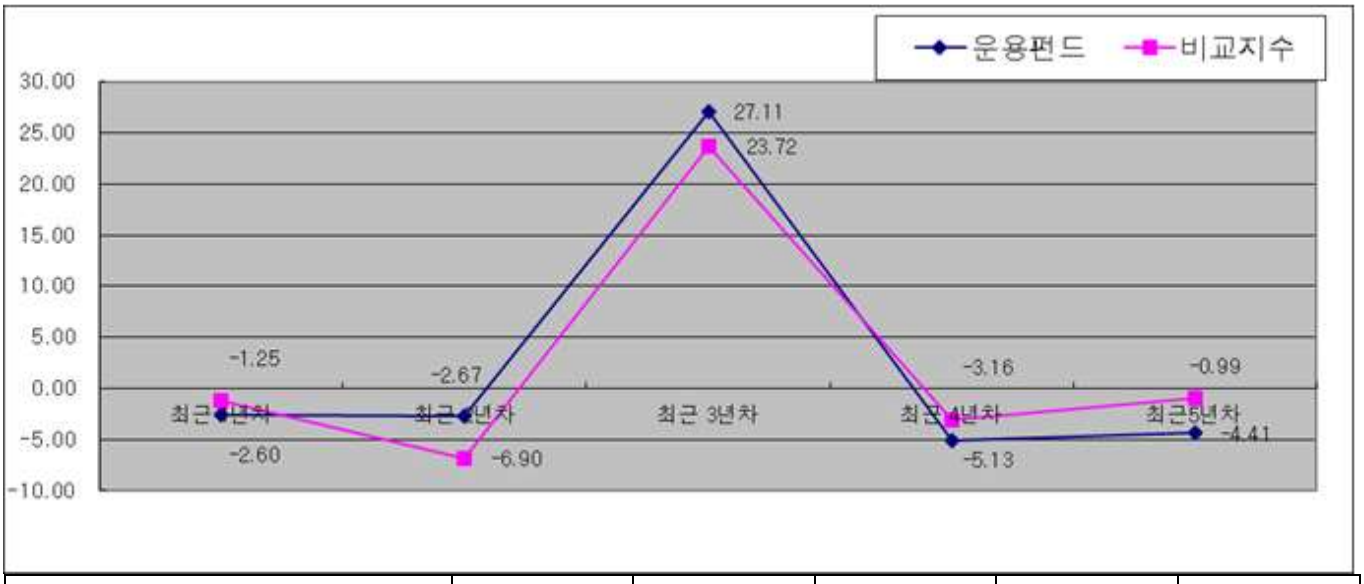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2.04.08 ~ 23.04.07	21.04.08 ~ 22.04.07	20.04.08 ~ 21.04.07	19.04.08 ~ 20.04.07	18.04.08 ~ 19.04.07
운용펀드	-2.60	-2.67	27.11	-5.13	-4.41
비교지수	-1.25	-6.90	23.72	-3.16	-0.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3.40	-3.45	26.18	-5.88	-5.19
비교지수	-1.25	-6.90	23.72	-3.16	-0.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3.13	-3.19	26.48	-5.63	-4.93
비교지수	-1.25	-6.90	23.72	-3.16	-0.99

주1) 비교지수 : [[(KOSPI200 X0.9) + (CD금리X0.1)]X0.4] + [[(KIS국고채2~3년*0.72) +(KIS통안 1~2년 * 0.18) + (Call금리 0.1)]X0.6]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3.01.1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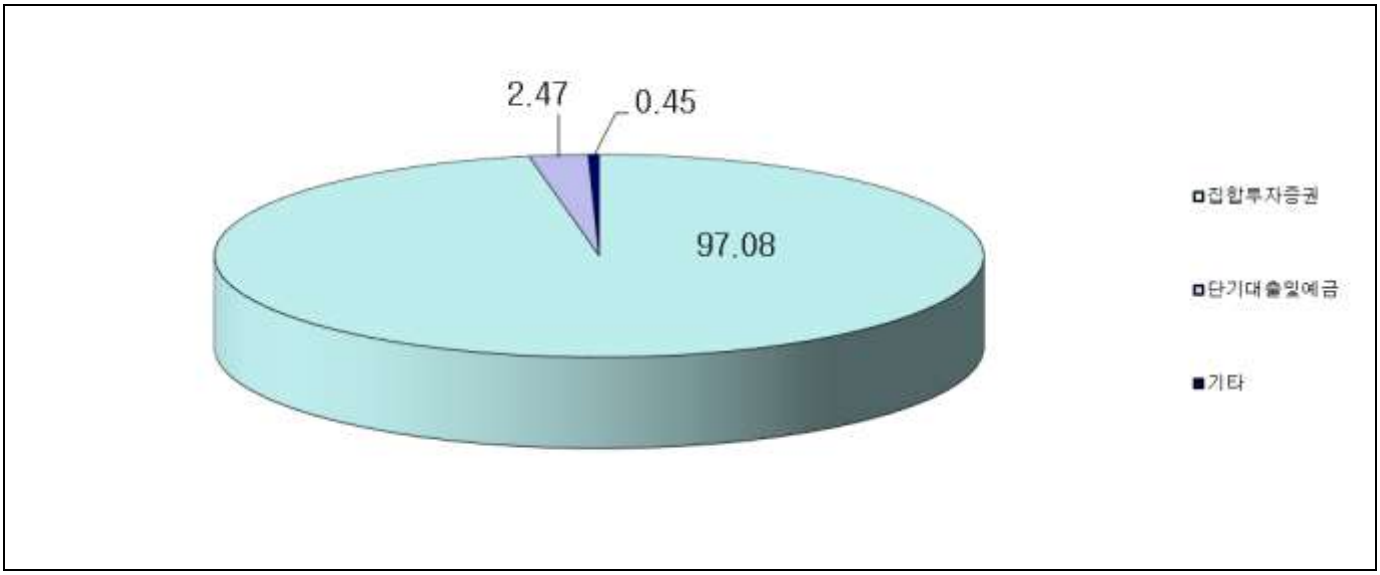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51	0	0	0	0	0	1	0	53
	(0.00)	(0.00)	(0.00)	(97.08)	(0.00)	(0.00)	(0.00)	(0.00)	(0.00)	(2.47)	(0.45)	(100.00)
합계	0	0	0	51	0	0	0	0	0	1	0	53
	(0.00)	(0.00)	(0.00)	(97.08)	(0.00)	(0.00)	(0.00)	(0.00)	(0.00)	(2.47)	(0.45)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1. 대신 실버연금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023.01.1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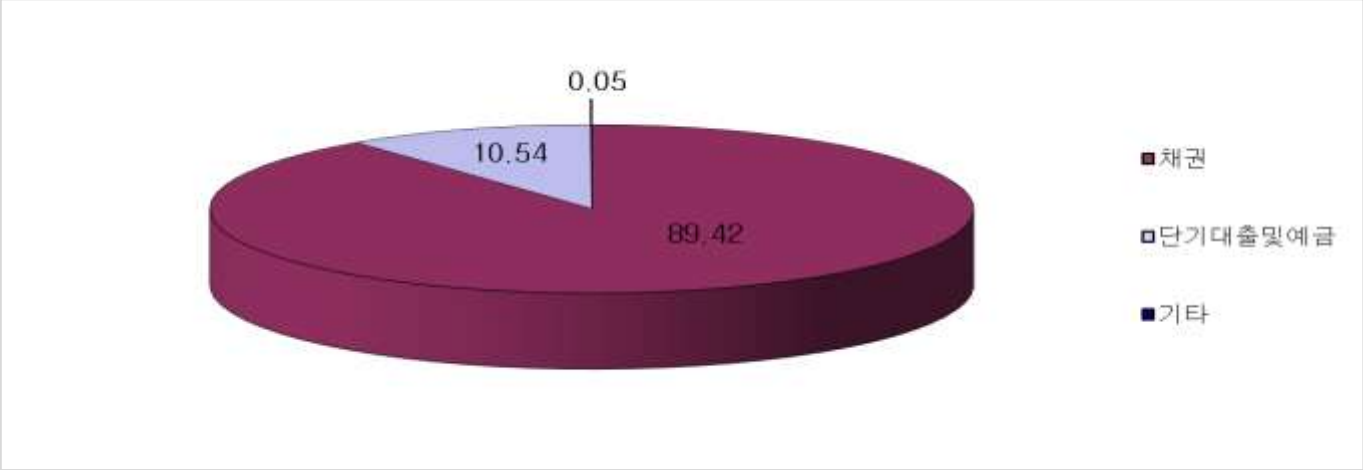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93	0	0	0	0	0	0	0	11	0	104
	(0.00)	(89.4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54)	(0.05)	(100.00)
합계	0	93	0	0	0	0	0	0	0	11	0	104
	(0.00)	(89.4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54)	(0.05)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합니다.

2. 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23.01.1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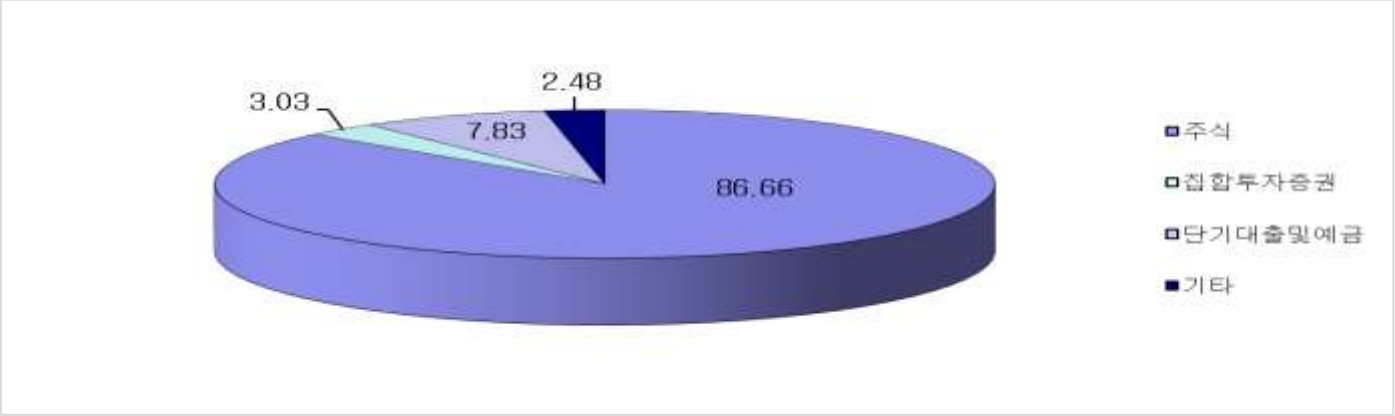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54	0	0	2	0	0	0	0	0	5	2	62
	(86.66)	(0.00)	(0.00)	(3.03)	(0.00)	(0.00)	(0.00)	(0.00)	(0.00)	(7.83)	(2.48)	(100.00)
합계	54	0	0	2	0	0	0	0	0	5	2	62
	(86.66)	(0.00)	(0.00)	(3.03)	(0.00)	(0.00)	(0.00)	(0.00)	(0.00)	(7.83)	(2.48)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합니다.

제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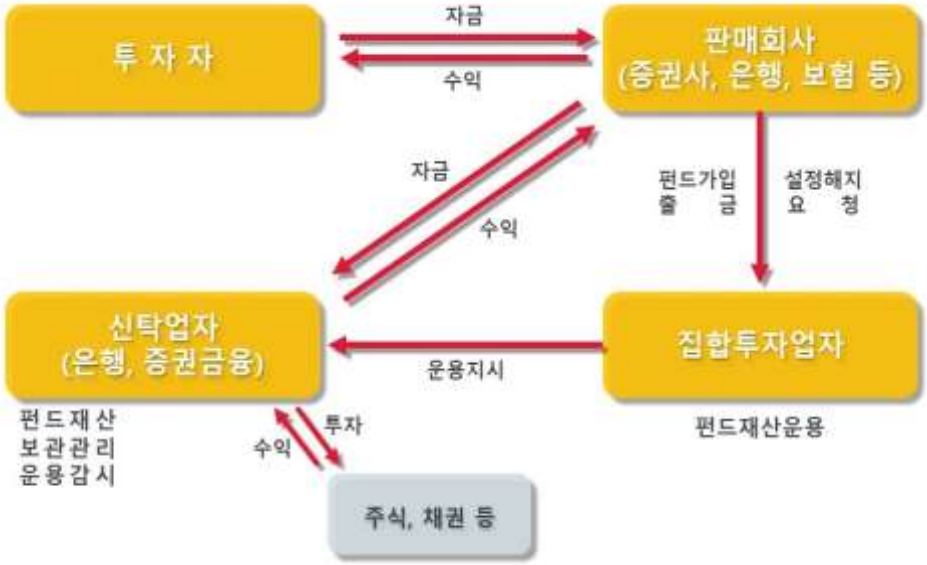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대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9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연락처 : 02-769-3449, asset.daishin.com)
회사 연혁	1988. 3 대신투자자문㈜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88. 4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1996. 6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6. 7 대신투자신탁운용㈜로 상호변경 1997. 7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주식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9.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겸영 인가(재정경제부) 2009. 6 140억 증자(납입자본금 440억) 2009. 8 280억 감자(납입자본금 160억) 2010. 5 대신자산운용㈜로 상호변경 2012. 6 130억 증자(납입자본금 290억) 2013. 3 한국창의투자자문㈜를 흡수합병 2016.12 본점 이전(여의도->명동) 2021.01. 본점 소재지 이전
자본금	290억
주요주주현황	대신증권㈜ (100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2.12.31	2021.12.31	계정과목	22.01.01 ~ 22.12.31	21.01.01 ~ 21.12.31
현금 및 예치금	18,885	19,855	영업수익	13,469	27,734
유가증권	23,742	30,481			
대출채권	217	112			
유형자산	5,223	4,288	영업비용	14,335	14,400
무형자산	752	752			
기타자산	3,963	3,967	영업이익	-866	13,333
자산총계	52,782	59,455	영업외수익	42	15
기타부채	6,169	8,336	영업외비용	59	546
부채총계	6,169	8,336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883	12,802
자본금	29,000	29,000	법인세비용	-	1,164
자본잉여금	4,394	4,394			
이익잉여금	13,069	17,665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50	60			
자본총계	46,613	51,119	당기순이익	-883	11,638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4.07. 현재 / 억원)**

구분	증권					부동산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및 혼합자산 파생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3,787	24,581	778	970	3,294	3,348	334	10,202	37	47,33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 가) ☎ 1588-2588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ib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80-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번지(운니동)삼환빌딩4층 ☏ 02-399-3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3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태화빌딩4층 ☏ 02-721-535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의무 및 책임

(1)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한 사항

(2)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 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호 및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헤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으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4월30일까지 직전 연도4월1일부터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 1년)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교부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교부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교부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교부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

	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